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었던 한옥체험업을 등록영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재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39호, 2020. 4.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외에 한옥의 시설별 일람표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 객실 수, 한옥의 연면적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이 발생한 시기에는 호텔업 등급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등급결정 기간을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8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1항제2호 중 “감소하였을”을 “감소했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하였을”을 “않았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으로 한정한다)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점점하여야”를 “점점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출석하여야”를 “출석해야”로, “철회하여야”를 “철회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외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일정한 직업상담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고 시

●환경부고시제2020-91호

“환경부 고시 제2020-59호(2020.4.3.)로 고시한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의 편입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당 초		변 경(1회)		소유자		비고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당초	변경	
	총 계				8,184.0		8,440.6			
1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 - 1	답	1,567.0	295.0	1,272.0		김**	김**	
2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 - 9	답			295.0	295.0	김**	영광군	
3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 - 2	답	928.0	49.0	879.0		이**	이**	
4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 - 10	답			49.0	49.0	이**	이**	
5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 - 4	답	1,140.0	48.0	1,092.1		김**	김**	
6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576 - 11	답			47.9	47.9	김**	김**	